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무배당)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사 업 방 법 서

##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무배당)

### 1. 보험종목의 명칭

명칭	보험종목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무배당)	100세연금형, 종신연금형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연금개시나이

#### 가. 보험기간

보험종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00세연금형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종신연금형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이라 함은 피보험자 99세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 나.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월납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5년	0세 ~ (연금개시나이-년납-최소거치기간)세

※ “최소거치기간”이라 함은 기본보험료 납입완료 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 필요한 최소기간을 말한다.

#### 다. 연금개시나이

50세 ~ 80세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만, 특약 가입 간 의무가입사항은 해당 특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되며, 관련내용은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한다.

###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기본보험료
5년납	30만원
7년납	30만원
10년납 이상	30만원

나. 추가납입보험료

- ①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 부터 “연금개시나이 - 5세” 연계 약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가능하다. 다만, 납입기간(다만, 「12.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의 “가”에서 정한 “납입일시중지” 신청 시,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하다.
- ②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주)의 100%로 하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연간 기본보험료 (기본보험료×12)의 100%로 한다.

(※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함은, “기본보험료×12×보험료 납입기간”을 말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시 변경없이 적용한다.

- ③ 「9.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②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에 합산한다. 또한,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 ④ ②부터 ③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②부터 ③의 한도를 적용한다.

국고채수익률이 이 계약의 “10.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

(※)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6.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당월분을 제외하여 6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 보험료는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부분은 추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며, 해약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다. 특약보험료의 경우, “가”에 따른 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의 선납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의 선납보험료 처리는 각 특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7.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8.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경우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 8.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9.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다만,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가”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 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하 “기본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에서 인출 가능하다.
- 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인출 이후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 등이 감소할 수 있다.

## 10.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공시기준이율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 ①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 (1)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

- (2)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3)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4)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5)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6) 「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②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_1) \\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_2) \\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_3) \\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_4)
 \end{aligned}$$

- (2)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3)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4) 국고채 가중치( $\beta_1$ ), 회사채 가중치( $\beta_2$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 $\beta_3$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 $\beta_4$ )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국고채 가중치}(\beta_1) &= \frac{a}{a+b+c+d} \\
 \text{회사채 가중치}(\beta_2) &= \frac{b}{a+b+c+d}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_3) &= \frac{c}{a+b+c+d} \\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_4) &= \frac{d}{a+b+c+d}
 \end{aligne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 ③ 운용자산이익률

(1)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2)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3)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4)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라. “다”의 공시이율은 동종계정에 있는 동종상품(“다”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초과 0.25%를 적용한다.

사.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영규정”을 따른다.

## 11.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라.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2. 보험료의 납입일시증지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1/2이 지난(다만, 10년납 이상의 경우 5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증지(이하 “납입일시증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증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증지기간”이라 한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납입일시증지를 신청할 수 없다.
  - ①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계약
  - ② 납입일시증지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기본보험료의 200% 미만인 경우
- 나. “가”에서 납입일시증지 이후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증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증지기간만큼 연장된다(이하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한다). 납입일시증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그 이후의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증지로 인하여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연금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소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최소거치기간이 지난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된다. 다만,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증지를 신청할 수 없다.
- 라. 회사는 납입일시증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및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이하 “납입일시증지 월공제액”이라 한다)을 매월 월계약해당

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납입 중 유지관련비용, 기타비용)은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한다.

마. 납입일시중지 신청시 1회 신청당 12개월을 최고한도로 하며, 총 납입일시중지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마”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사.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①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의 정의

②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감소되며 계약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

③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 및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최고한도 내에서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으로 총당 가능한 최대 개월수

아.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자.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13.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 월공제액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하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월공제액
<p>(1) 월공제액</p> <p>&lt;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인 경우&gt;</p> <p>해당월의 위험보험료(기본보험료 납입완료 후)</p> <p>+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p> <p>+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p> <p>+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납입 후에 한함)</p> <p>&lt;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인 경우&gt;</p> <p>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p> <p>+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p> <p>+ 계약관리비용(연금지급부분)</p>

다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중 유지관련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지급금이 "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는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월납의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및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이하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이라 한다)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납입 중 유지관련비용, 기타비용)은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

#### 14.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①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누계
- ②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누계

나. "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해당 감액(또는 인출)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합계를 말한다. 또한, 아래에서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에 감액(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 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 (1) 기본보험료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보험료}}{\text{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2) 기본보험료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보험료}}{\text{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②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액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산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차감한다.

## 15.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기준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각 시점별로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합계를 말하고,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각 시점별로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기준 기본보험료」로 포함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해당 감액(또는 인출) 이후에 납입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또한, 아래에서 감액(또는 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에 감액(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1) 기본보험료 감액 직후의 「기준 기본보험료」

$$= \text{감액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2) 기본보험료 감액 직후의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text{감액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②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1) 인출 직후의 「기준 기본보험료」

$$= \text{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2) 인출 직후의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text{인출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후 추가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추가 계약자적립액}}$$

라. “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감액(또는 인출)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 감액(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다”에 따라 계산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 16. 「최저연금기준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최저연금기준금액」은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최저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보험종목	경과기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100세연금형	20년 이내	7%
	20년 초과	5%
종신연금형	20년 이내	6%
	20년 초과	4%

나. “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연금기준금액」은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해당 감액(또는 인출) 이후에 납입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1) 감액 직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frac{\text{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2) 감액 직후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frac{\text{감액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②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1) 인출 직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frac{\text{인출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text{인출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times \frac{\text{인출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2) 인출 직후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frac{\text{인출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text{인출 직전 추가 계약자적립액}} \times \frac{\text{인출 직후 추가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추가 계약자적립액}}$$

다.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최저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감액(또는 인출)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은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 감액(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한다.

## 17. 최저사망지급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지급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 당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 당시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한다.
- 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

### 18. 연금기준금액에 관한 사항

- 가. 「연금기준금액」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지급금 및 금리연동연금액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금기준금액」은 계약자가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 \text{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인출 직후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다.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연금기준금액」을 말한다.

### 19.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에 관한 사항

- 가.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은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에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1)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아래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며, 해당 지급률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 = 기본지급률 x ( 1 + 장기유지가산율 )	

#### (2) 기본지급률

<100세연금형>

연금개시나이	남자	여자
--------	----	----

50세이상 55세미만	3.02%	2.93%
55세이상 60세미만	3.27%	3.15%
60세이상 65세미만	3.60%	3.45%
65세이상 70세미만	4.05%	3.85%
70세이상 75세미만	4.55%	4.35%
75세이상	5.20%	5.00%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남자	여자
50세이상 55세미만	2.82%	2.73%
55세이상 60세미만	3.07%	2.95%
60세이상 65세미만	3.40%	3.25%
65세이상 70세미만	3.85%	3.65%
70세이상 75세미만	4.35%	4.15%
75세이상	5.00%	4.80%

(3) 장기유지가산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장기유지가산율
25년이상 40년미만	30%
40년이상 55년미만	35%
55년이상	40%

## 20. 기 타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 ① 10년납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 ② 이미 지난 납입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 ③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변경후의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 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을 최저로 한다.
- 마.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바.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 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 회사는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연금기준금액이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